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5
----------	------

2017년 3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의원 외 24인
- 나. 발 의 일 : 2017년 1월 10일
- 다. 회 부 일 : 2017년 1월 11일
- 라. 상 정 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용석(도봉)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토양을 굳건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라 할 수 있음. 이에 기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7. 1. 16 ~ 2017. 1. 23)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기념사업 범위 확대 및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 현재, 서울시에서 최근 3년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4·19혁명 기록물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 6월 민주항쟁 30주기 기념 문화제 사업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역 (사업비)	주관부서
4·19혁명 기록물 조사 및 목록화 (2014~2016)	-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한 등재 추진체계 구축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전 작업 (자료수집, 문헌연구, 현지조사 등) 추진 -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완자료 제출, 학술회의·세미나 개최 등 유네스코 등재심사 준비	206백만원 (시비86백만원) 구비120백만원)	역사 문화재과 강북구청
인권현장 표석화 (2016년도)	- 시청 앞 인권 ‘지문’ 조형물 - 남산 옛 안기부 자리 안내표지판	365백만원	인권 담당관
6·10민주항쟁 (2013~2015)	-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기념식 개최장소	자치 행정과
30주기 6월 민주항쟁 기념 문화제(2017)	- 전야제, 대한민국 민회, 마당극 공연 등	10억원 (예산편성액)	자치 행정과

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2조의2, 안 제2조의3 신설)

- 안 제2조의2와 안 제2조의3은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본계획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주기 등을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

- 안 제3조는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보존·전산화·관리를 추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범위에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 ----- ----- -----.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1. ~ 3.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4. -----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
<신 설>	5.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국가단위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며, 동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업¹⁾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국가의 사업과의 중복성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대체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타 지방자치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범위>

1	경기도	1.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기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전시·편찬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3조
3	대전	1. 대전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4	인천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전시·편찬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5	대구광역시	1.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입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6	광주광역시	1. 광주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 2. 추모사업 등 기념사업 추진 3.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8	경상남도	1.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경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10	전라남도	1.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또한, 기념사업 중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운영 및 전산화사업’ 관련비용 추계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24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중인 사업 및 타 시·도와의 중복성 여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관으로서의 타당성 등을 살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리모델링 공사비	-	7,242,000	5,242,000	3,243,000	-	15,727,000
전시시설 공사비	-	-	500,000	700,000	1,400,000	2,600,000
설계비 감리비	1,000,000	833,000	-	-	-	1,833,000
정보화 및 기자재비	-	-	800,000	1,000,000	2,200,000	4,000,000
계	1,000,000	8,075,000	6,542,000	4,943,000	3,600,000	24,160,000

※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한 유사사례는 5·18기념문화센터(광주광역시)과 민주

항쟁기념관을 포함한 부산민주공원(부산시)이 있음(참고 1 참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안 제6조 신설)

- 안 제5조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민주화운동 위원회를 두어 민주화 운동 관련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위원회 등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바, 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례안이 집행부의 조직편성권을 침해²⁾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

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타 위원회의 규정과 같이 특정 분야의 위원 편중 방지 및 대표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수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추87 판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집과 정리를”을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의2(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2조의2(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p> <p>2. <u>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u></p> <p>3. <u>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u>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③ <u>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u>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u></p> <p>2. <u>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u></p> <p>3. <u>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p> <p>4. <u>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p> <p>5. <u>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③ <u>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3조(기념사업)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4. <u>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u></p>	<p>제3조(기념사업) <u>시장은</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u> -----</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5. <u>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6. <u>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7. <u>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u>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생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